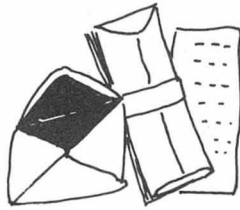


본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에 대해 각계에 건의서 제출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규모 돈사 200㎡ 이상에서 700㎡ 이상으로 상향조정 건의!

본회는 정부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대한 대책 건의서를 긴급 작성, 1월 15일 농림수산부·보사부·환경청 등 관계당국과 민정당·신민당·국민당에 각각 제출했다.

본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돈사면적 200㎡ 이상(특별청소지역은 100㎡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설치시설 규모를 돈사 200㎡ 이상에서 7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본회는 또 건의문에서 「폐수정화시설 설치 규모를 돈사 200㎡ 이상으로 할 경우 농가부담가중은 물론, 돼지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돈육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는 또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액비의 자가농지(목초지, 과수원) 산포시에는 그 시설을 인정해 줄 것 △ 기존에 설치된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도 인정해 줄 것 △ 양돈농가들이 복합영농으로 경작하는 농경지, 또는 인근농가와와의 계약 산포시에는 정화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본회는 전국의 61개 지부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에 따른 대응방안과 활동지침」을 긴급 시달했다.

본회는 이 지침을 통해 각 지부는 △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안)을 양돈농가에 자세히 알리고 △양돈농가들로부터 연명날인을 받아 지부별 건의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설치 규모를 7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본회가 관계기관 등에 긴급 제출한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책 건의

1. 민주화와 선진조국 창조에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_____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여 왔으며 축산물은 제 2의 식량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기반은 아직도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규모와 투자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대부분 농가부업규모로써 농가의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하는 한편, 이제는 자급단계에 와 있습니다. (별표 1 참조).

3. 그러나, 작금 누적된 농가부채와 농가고

역조건 악화로 농촌경제가 침체되어 최근 농촌 활성화 종합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공포(1986. 12. 31)됨에 따라, 돈사면적이 200㎡ 이상(특별청소지역은 100㎡ 이상)의 돈사시설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동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환경청 공고 제 86-8호, 1986. 12. 26)되어 이에 대한 여론은 축산업의 존폐위기로 보는 등 축산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4. 당회에서는 동법시행령(안)에 대한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시설투자 능력이 없는 양축농가를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곧 축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태가 벌어져 막대한 외화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 바,

5.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한 면적은 돈사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령(안)의 면적 200㎡ 이상에서 7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별첨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별표 1〉 돼지 사육 구조 현황

(86년 9월 현재)

구 분	사 육 호 수	사 육 두 수	비 고
50두(100제곱미터) 이하	233,826호(95.44%)	1,032,420두(30.3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 -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돈사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50두(100제곱미터) 이상	11,179호(4.56%)	2,364,907두(69.61%)	
합 계	245,005호(100%)	3,397,327두(100%)	
100두(200제곱미터) 이하	239,877호(97.91%)	1,452,288두(42.87%)	폐기물 관리법시행령(안) - 돈사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100두(200제곱미터) 이상	5,128호(2.09%)	1,941,039두(57.13%)	
합 계	245,005호(100%)	3,397,327두(100%)	

주) 일관 경영시 사육두수 두당 돈사 소요면적 2'제곱미터 기준.

〈별첨〉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책 건의〉

현 황 및 문 제 점	대 책 건 의
<p>(현황)</p> <p>1.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법률 제3904호로 제정·공포(1986. 12. 31)되어 시행(1987. 4. 1)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p> <p>2. 그 시행에 앞서 환경청장은 1986년 12월 26일자로 돈사면적 200제곱미터 이상(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돈사시설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을 환경청 공고 제86-8호로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p> <p>(문제점)</p> <p>1. 현행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돈사시설의 하한규모가 너무 낮게 잡혀 있어, 대다수 소규모 양돈농가의 설치비용 부담가중으로 농촌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p> <p>2. 또한 농가부채 탕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농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절박한 상황하에서, 동법 시행령(안)의 규정은 그나마 농가소득 증대품목으로 크게 기여해 온 양돈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돈육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와해시킬 뿐만아니라, 농가소득증대에 크나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p>	<p>1.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하한규모를 7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고</p> <p>2.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돈분뇨는 농지에 환원시키는 것이 원칙인 바, 저장조를 만들어 액비로 자가농지(목초지, 과수원 등) 또는 인근 농지에 산포할 시 그 시설은 인정해 주고</p> <p>나. 기존에 설치된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도 인정해야 하며</p> <p>다. 양돈농가들이 농경지(목초지 또는 과수원 등)를 경작하는 경우(자가농지증명), 또는 인근 농가와 의 계약 산포 실적이 첨부될 시 그 돈사면적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를 제외하여야 함.</p>

독자투고안내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태여 무슨글을 보내달라고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나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 실패담, 임상수기, 건의사항, 양돈기술상담, 세무상담, 지부소식등 어떤 내용이던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쓸시간이

없으시다면 본지 기사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 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아무쪼록 알찬 양돈 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채택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겠습니다.